

# 2009년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 일시 : 2009. 12. 28(월) 13:30-16:30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제1회의실



## 2009년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 일 시: 2009. 12. 28(월) 13:30-16:30

■ 장 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제1회의실

■ 프로그램:

---

좌장: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13:30~14:50 주제발표

발표1: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표2: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14:50~15:00 coffee break

15:00~15:30 지정토론

발표1: 김수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발표2: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부연구위원)

15:3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



# 목 차

- ▶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1
  
- ▶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 ..... 21



#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출산이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2009. 12.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 연구동기

---

-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고령화가 촉진되어 생산성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출산율제고 정책은 단기간 내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움(Kohler, Billari and Ortega(2006) 참조)
- 조세 및 정부보조금 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 등이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의 크기는 작음

### 연구동기(계속)

---

- 사회전체의 인식전환과 자녀를 낳고 키우는 양육과정에 대한 사회전체의 역할분담과 참여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

### 연구질문

---

-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이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
- 한 생명의 탄생으로 인한 생산 및 고용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고용위축과 산출하락문제의 심각성을 역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 또한 탄생이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행위를 살펴봄으로써 단기적인 고용 및 생산효과의 계산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라고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 출산율의 하락이 장기적인 잠재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고용창출을 저해하고 국가 내 생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

### 우리나라의 출산현황

---

- (낮은 합계출산율)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8년 1.19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주 출산연령대의 고령화) 주 출산연령층이 20~24세에서 최근 30~34세로 고령화되는 추세
- (저출산의 원인)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다음과 요인들이 있음
  -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 및 인구정책
  - 국민소득 상승, 교육수준 향상, 보건의료 수준 발달, 영아사망을 급감, 少자녀 선호의 가치관의 변화 등의 사회경제발전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와 육아 및 교육비용 상승

- 청년층의 불안한 고용여건 및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

### 저출산의 문제점

- KDI(2004), 박형수·류덕현(2006), 조세연구원(2007)에 따르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표 S-1> 참조)
- 1인당 GDP의 경우 4%대에서 1.8~1.9%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

<표 S-1>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한 비교

(단위: %)

	박형수·류덕현 (2006)	KDI (2004)		조세연(2007)
		TFP=1.5%	TFP=2.0%	
2011~20	4.04	4.19	4.83	3.94
2021~30	3.02	3.06	3.73	3.03
2031~40	2.09	2.28	2.93	2.41
2041~50	1.90	1.91	2.56	1.84

### 분석방법론

- 출산이 국민총생산과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개발
  - OECD 어떤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학문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는 방법론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님
- (쉬운 추계방법) 최종 국내수요(수입제외)를 인구로 나눈 인구 1인당 산출액은 37,829,419원이고, 인구 1인당 취업인 수는 0.372명

- (쉬운 접근의 한계) 위와 같은 거시적 추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출산정책의 효과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출생이후 각 생애주기별로 도출되는 다양한 관련 소비 및 산출액, 취업인원 수를 살펴보지 못함
  - 일종의 평균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어 추가적 자녀 한명의 출산으로 인한 한계효과 추정에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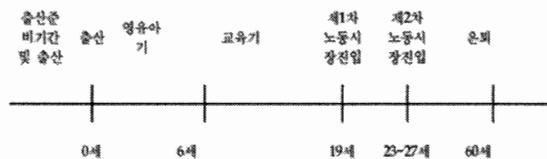
## 분석방법론

- (방법론 개요)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단계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자세하고 풍부한 분석을 수행
- 분석 1단계: 생애주기 분류
  - 분석 2단계: 해당 생애주기의 관련산업 정의
  - 분석 3단계: 해당 산업의 해당 연령층의 최종수요 추정
  - 분석 4단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산업의 해당연령 1명당 고용, 취업 및 산출효과 추정
  - 분석 5단계: 생애주기별, 관련 산업별 효과 집계(agggregation) 및 출산정책 시뮬레이션

## 1단계

- (분석 1단계) 한 사람의 인생을 소비, 노동공급 등에 따라서 출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기, 은퇴시기 등으로 분류

[그림 S-9] 생애주기 분류



## 2단계

- (분석 2단계) 해당 연령기에 관련된 산업들을 가능한 한 세세하게 정의
- 예를 들어 영유아기 관련 소비산업은 소아과 의료서비스, 의류 및 기저귀, 영유아기 장난감 및 서적,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로 정의(<표 S-2> 참조)
  - 특정 연령과 매칭이 되지 않는 산업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 따로 분류

<표 S-2> 영유아기의 소비활동

	관련 재화 및 서비스	내용
영유아기	-소아과 의료서비스	소아기의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서비스
	- 의류 및 기저귀	
	-영유아기 장난감 및 서적	
	-영유아 공적 보육 및 교육서비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 수에 근거하여 시설투입비용을 항목별로 산출하여 산정

## 3단계

- (분석 3단계) 해당 연령층에 해당 산업의 국내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를 추정
- 예를 들어 분유 지출의 경우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기의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규모와 고용규모를 파악(<표 S-3> 참조)

<표 S-3 > 분유기업의 매출액 및 종업원수

(단위: 백만원 명)

분유회사	분유매출액	분유생산관련 종업원수
남양유업	158,921	410
매일유업	157,383	371
일동후디스	75,000	343

#### 4단계

- (분석 4단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해당 연령층 1명당 산출 및 고용효과를 추정
  - 고용(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을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추정

<표 S-4> 아동 1인당 분유 및 이유식 소비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단위: 원, 명)

구분		산출 및 최종수요	고용
분유 (연간)	산업 내	584,347	0.002
	전산업	1,591,312	0.011~0.014

#### 5단계

- (분석 5단계) 위에서 구해진 효과들을 이용하여 출산정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출산~영유아기, 출산~학령기, 출산~사망 별로 집계
-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위의 주요 분석 외에도 출산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출산모의 노동공급 변화가 고용과 생산에 주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음

## 투입산출표

〈표 N-5〉

생산유발계수표 : (I-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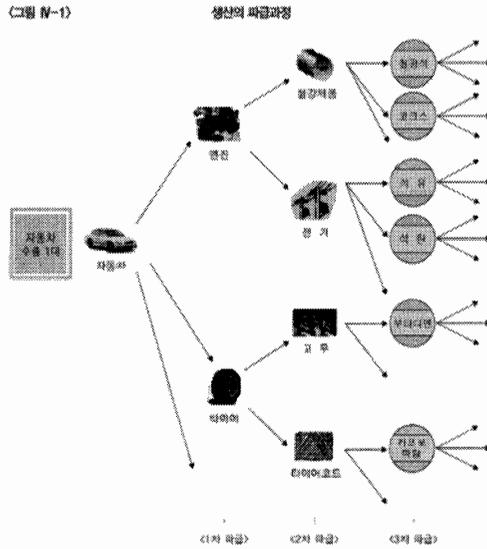
	농림어업	광공업	기타산업	합계
농림어업	1.0695	0.0833	0.0248	1.1776
광공업	0.6495	2.3852	0.5322	3.5669
기타산업	0.3157	0.4718	1.4775	2.2651
합계	2.0347	2.9403	2.0345	7.0095

〈표 N-6〉

생산유발계수의 의미

	1 부문	2 부문	3 부문	합계
1 부문	$F_{1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F_{21}$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F_{31}$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F_{11} + F_{21} + F_{31}$ 자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를 충족하려면 재·역물 류가 필요한 재·역물 류 총량이 위하여 필요한 1부문의 산출단위
2 부문	$F_{2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F_{2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F_{32}$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F_{21} + F_{22} + F_{32}$ 자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를 충족하려면 재·역물 류가 필요한 재·역물 류 총량이 위하여 필요한 2부문의 산출단위
3 부문	$F_{3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F_{3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F_{3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F_{31} + F_{32} + F_{33}$ 자 부문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를 충족하려면 재·역물 류가 필요한 재·역물 류 총량이 위하여 필요한 3부문의 산출단위
합계	$F_{11} + F_{21} + F_{31}$ 1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F_{21} + F_{22} + F_{32}$ 2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F_{31} + F_{32} + F_{33}$ 3부문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 으로 필요한 전 부문의 산출단위	

〈그림 H-1〉



###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에 따른 산출 및 고용효과

- 생애주기를 크게 4개로 분류하고 각 연령 단계에 대한 산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
  -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 청소년기 및 청년기
  - 노동시장참여기간
  - 은퇴기 이후
  
- 한편, 특정 연령에 한정 지어진 소비가 아닌 경우는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로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

##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와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서비스(소아과, 산부인과 등),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식품소비(분유, 이유식), 기타 소비로 분류
- 출산,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자녀 1명당 약 0.17개의 직/간접적 일자리와 약 4천 4백만원 정도의 산출효과가 있음(<표 S-5> 참조)

<표 S-5 > 출생-영유아기의 산출 및 고용효과 종합

출생-영유아기	산출효과	일자리 수
의료서비스	9,839,735	0.0455
보육 및 유아교육서비스	25,523,292	0.0970
식품소비(분유, 이유식)	3,560,452	0.0190
기타 소비	5,304,886	0.0060
총계	44,248,366	0.1675

## 청소년기 및 청년기

-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분류하였고, 산업으로는 크게 공교육 부문, 사교육 부문, 소비지출 부문으로 분류
- 소비지출의 경우 통계청의 가계조사(2008)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소비지출의 세부문은 가계조사 항목과 산업연관표의 분류를 매칭하는 방법으로 분류

- 먼저, 교육부문의 효과는 자녀 1명이 창출하는 일자리수가 약 0.56개이고  
 생산효과는 연간 3천 2백만원에 이룸(<표 S-6> 참조)
- 일자리 창출에는 공교육의 효과가 사교육의 효과보다 큼
  - 일자리 창출 및 생산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표 S-6> 학령기 교육의 일자리 및 생산효과

		1인당 일자리	1인당 생산효과
초등학교	공교육	0.069	3,672,000
	사교육	0.066	3,799,819
중학교	공교육	0.094	5,447,368
	사교육	0.067	3,896,447
고등학교	공교육	0.122	7,083,070
	사교육	0.058	3,343,243
대학이상	공교육	0.086	4,993,287
계		0.562	32,235,234

-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약 0.16개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초등학교가 약 0.03, 중학교가 약 0.02, 고등학교가 0.04, 대학생이 0.06으로  
 연령에 따라 U-자형 모형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보여줌

<표 S-7> 학령기 소비지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가계조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계
육류및육가공품	0.00030	0.00041	0.00037	0.00037	0.00145
난류품	0.00020	0.00015	0.00008	0.00004	0.00047
수산물	0.00023	0.00007	0.00027	0.00063	0.00120
곡물	0.00005	0.00009	0.00005	0.00008	0.00027
빵과정원곡수류	0.00039	0.00041	0.00037	0.00039	0.00156
유지및조미료	-0.00006	0.00002	0.00015	0.00012	0.00023
과실및채소가공품	0.00055	0.00039	0.00062	0.00122	0.00278
차및음료	0.00006	0.00004	0.00004	0.00007	0.00021
편의제이복신발	0.00261	0.00285	0.00299	0.00489	0.01334
종이	0.00004	0.00003	0.00002	0.00001	0.00010
의약품및장품	-0.00003	-0.00002	0.00016	0.00033	0.00044
가정용전기기기	0.00008	-0.00003	-0.00006	0.00002	0.00001
주류	0.00009	-0.00015	0.00036	0.00048	0.00078
의식	0.01657	0.01509	0.02200	0.02721	0.08087
교복	0.00794	0.00318	0.01296	0.02451	0.04859
교양오락서비스	0.00111	-0.00018	0.00014	0.00416	0.00523
계	0.03011	0.02238	0.04053	0.06453	0.15752

## 노동시장참여기간

- 위에서 분류한 통상적인 소비지출과 추가적으로 결혼으로 인한 소비지출 증가에 대해서 분석
- 학령기 이후 노동시장 참여기간의 소비지출을 통해서 성인 1명당 약 0.067명의 일자리와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음

<표 S-8> 노동시장참여기간 소비지출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노동시장참여기간 일반 소비	전산업	10,020,415	0.067

- 결혼관련 산업의 경우 성인 1명당 약 0.02명의 일자리 창출과 1백 25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표 S-9> 결혼산업의 일자리창출 및 생산효과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
결혼서비스	산업내	606,500	0.015
	전산업	1,252,113	0.019

## 은퇴기 이후

- 정부가 고령친화사업 진흥법을 제정하면서 고령친화제품으로 분류한 제화와 서비스를 은퇴기 이후 소비품목으로 설정하여 산출 및 고용효과를 분석
- 노인 1명당 약 0.13개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1천 4백만원 정도의 생산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표 S-11> 참조)

<표 S-10> 고령친화사업의 생산 및 고용

부문	노인 1인당 산출	노인 1인당 취업인원	노인1인당 취업유발인원
의료서비스	7384146.759	0.044273568	0.068659919
요양산업	214364.237	0.001285334	0.001993220
기기산업	588870.629	0.001249024	0.003479140
정보산업	12754.267	3.50532E-05	7.99979E-05
여가산업	1321983.137	0.014811631	0.022962372
금융산업	1471041.956	0.005160795	0.009173542
주택산업	15867.343	6.94671E-06	2.54609E-05
한방산업	478711.020	0.001351962	0.002801337
농업	91645.517	0.002135129	0.002582179
의료비 제외	4195238.105	0.026035876	0.043097248
교통신용	350328.505	0.002629665	0.00316559
식품	461493.681	0.000845264	0.005240252
의약품	1272420.476	0.002136611	0.006237917
장묘산업	584180.583	0.003502765	0.005431879
의류	278664.987	0.000728936	0.001642525
교육산업	32587.403	0.000465883	0.000539310
	2979675.635	0.010309123	0.022408442
전계 합	14,559,060.000	0.080000000	0.130000000

### 생애주기에 따라 소비가 구분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

- 소비지출이 특정 연령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게 되는 산업에 자동차, 금융서비스, 주택소비를 포함시킴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약 0.005개, 금융은 약 0.02개, 주택은 약 0.04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음
- 한편, 생산효과의 경우 자동차와 금융이 1백 3십만원, 주택건설이 약 1백 6십만원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

<표 S-11> 자동차, 금융, 주택 산업의 1인당 생산 및 고용

		산출 및 최종수요(원)	고용(명)
자동차 산업	산업 내	483,892	0.00118
	전산업	1,314,506	0.00520
금융 및 보험	산업 내	715,488	0.01200
	전산업	1,294,757	0.02000
주택건설	산업 내	809,115	0.00072
	전산업	1,657,999	0.04000

### 총괄

□ 일자리창출 효과의 경우 약 1.15개의 일자리가 자녀 1명의 출산을 통해 생애 주기동안 창출

<표 S-12> 전체 산업에 미친 고용효과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음소비	소비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영유아기	0.0455	0.097		0.019	0.006						0.1675
초등학교		0.069	0.066		0.030						0.1650
중학교		0.094	0.067		0.022						0.1830
고등학교		0.122	0.058		0.040						0.2200
대학교		0.085			0.064						0.1490
노동시기					0.067	0.019				-0.019	0.0670
은퇴기	0.0700				0.060						0.1300
시기무관							0.0052	0.02	0.04		0.0652
총계	0.1155	0.467	0.191	0.019	0.289	0.019	0.0052	0.02	0.04		1.1467

□ 한편 산출효과외의 경우 자녀 1명이 생애주기 동안 약 12억 2천만원의 효과를 가져옴

<표 S-13> 전체 산업에 미친 산출효과

시기	의료	공교육	사교육	식음 소비 (분류 및 आयु-각)	소비일반	결혼 서비스	자동차	금융	주택	음의 효과	총계
출생-영유아기	9,889,738	25,523,292		3,586,432	5,394,867						44,284,326
초등학교		27,268,170	43,996,908		23,447,020						94,682,098
중학교		36,342,535	21,689,541		9,989,971						67,122,047
고등학교		21,240,209	10,029,728		15,472,956						46,742,893
대학교		19,973,338			32,489,740						52,412,909
노동시기					403,856,412	12,521,130				-20,176,286	383,381,446
은퇴기	103,782,205				168,123,495						266,885,930
부분할											883,634,689
시기무관							105,560,480	103,590,639	132,407,920		341,549,039
총계	123,671,943	133,347,529	63,685,578	3,586,432	563,485,961	12,521,130	105,560,480	103,590,639	132,407,920		1,224,983,689

### 합계출산율에 따른 생산 및 고용효과 가상실험

- 정부정책으로 인해 출산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가정 하에 추가로 출생한 아동의 소비증가가 가져올 일자리창출효과와 산출효과를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추계
  - 분석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위해서 2010년에 합계출산율이 5%, 10%, 20%, 30%, 33% 증가하였을 때의 시나리오 하에서 출산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계
  - 33%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2라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인 1.6에 도달하는 증가율
- 출산정책의 효과를 영유아기, 중기학업연령기, 노동시장기 및 은퇴기로 나누어서 추계결과를 제시

<표 S-14> 출산율 제고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

(단위: 명)

		5%		10%		20%		30%		33%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영유아기	영유아기 까지	3,670	612	7,339	1,223	14,679	2,446	22,018	3,670	24,220	4,037
학령기	학령기 까지	19,378	881	38,756	1,762	77,512	3,523	116,268	5,285	127,895	5,813
	학령기만	15,708	982	31,417	1,964	62,833	3,927	94,250	5,891	103,675	6,480
노동기	노동기 까지	20,846	336	41,692	672	83,384	1,345	125,075	2,017	137,583	2,219
	노동기만	1,468	37	2,936	73	5,871	147	8,807	220	9,688	242
은퇴기	은퇴기 까지	23,884	310	47,768	620	95,535	1,241	143,303	1,861	157,633	2,047
	은퇴기만	3,038	203	6,076	405	12,152	810	18,228	1,215	20,051	1,337
시기무관		1,428		2,857		5,714		8,571		9,428	

&lt;표 S-16&gt; 출산율 제고 정책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

(단위: 십억원)

		5%		10%		20%		30%		33%	
		총합 <sup>*</sup>	평균 <sup>**</sup>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총합	평균
영유아기	영유아기 까지	969	162	1,939	323	3,878	646	5,816	969	6,398	1,066
학령기	학령기 까지	5,994	272	11,988	545	23,975	1,090	35,963	1,635	39,560	1,798
	학령기만	5,024	314	10,049	628	20,098	1,256	30,147	1,884	33,161	2,073
노동기	노동기 까지	14,607	236	29,215	471	58,430	942	87,645	1,414	96,409	1,555
	노동기만	8,614	215	17,227	431	34,454	861	51,681	1,292	56,849	1,421
은퇴기	은퇴기 까지	19,359	251	38,718	503	77,436	1,006	116,154	1,506	127,770	1,659
	은퇴기만	4,752	317	9,503	634	19,007	1,267	28,510	1,901	31,361	2,091
사기무관		7,478		14,957		29,914		44,871		49,358	

###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출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생산유발액 수준에 대해 한 개인이 출생으로부터 영유아기, 교육기, 노동시장 참여시기, 은퇴이후의 소비시기를 거치면서 영위하는 소비활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소비활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와 생산수준을 측정
- 각 생애주기별 소비항목은 해당시기의 대표적인 소비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일부 비중이 크지 않은 항목은 본 연구에서 제외

- 시기별 산정을 모두 종합할 경우, 한 개인은 탄생과 함께 노동활동을 접고 은퇴하여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자리는 1.15명, 전체 생산유발액은 12억2천만원을 창출
  -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1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평균할 경우 출생 후 20년 동안에 걸쳐 매년 약 0.05명의 일자리를 창출
- 연구결과로부터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중단기적으로도 이미 일자리수가 줄어들고 생산이 위축되는 것을 확인
- 기술진보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과 산업구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일자리 수와 생산증가의

효과가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적어도 2008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한 개인이 생애주기에 걸쳐 창출하는 일자리 수와 생산액은 출생이 발생한 시점부터 그리 길지 않은 기간내에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
- 저출산 문제가 미래 경제활력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
-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을 입안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됨

#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

# 부모 보험 제도 도입 방안

## 1. 부모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 한국의 저출산 요인은 “사회직장요인>자녀요인>소득요인>가치관요인” 순서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 없이 기대 가능한 출산율 수준은 초저출산 국가의 합계 출산율 수준보다도 낮은 1.26명으로 나타났음 (삼성경제연구소, 2005, 2006)
  - ※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8년 현재 1.1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률이 높음. 이는 일 가정 양립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용이한 국가일수록 출산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수준 제고와 더불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함. 이를 위해서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하여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표 1> OECD 국가의 출산률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2006년)

(단위: 명,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한국
합계출산율	1.85	1.84	1.72	1.98	1.84	1.13
여성경제 활동참여율	81.5	81.7	75.1	73.4	74.9	60.0

-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의 현실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극히 제한적인 여성 취업자만이 육아 휴직 급여를 제공 받고 있음
    - ※ 2007년 현재 여성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32.7%, 여성 임금 근로자 중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47.5% (고용보험통계, 2007)
  - 여성 취업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및 직장 내 여성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율도 극히 저조한 실정임
    - ※ 2007년 현재 산전후 휴가를 신청한 여성 근로자 60,964명 중 육아 휴직을 신청한 여성은 20,875명으로 34.2%에 불과 (고용보험통계, 2007)
- 현재와 같이 고용 보험 체계 안에서 육아 휴직 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속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30~40대 기혼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는 52.1%, 비정규직 근로자는 47.9% (여성가족패널조사, 2007)

- 여성 근로자의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라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고용 보험 가입자 뿐 만아니라 근로자 전체 여성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365일 중 매월 50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여성 노동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여성 육아 휴직 활용도를 낮추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여성의 경우 낮은 휴직 급여로 인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부부 중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은 부인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국내 남성 육아 휴직 사용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육아 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적 성격의 “부모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고용 보험 가입자 이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저출산 정책은 주로 자녀 양육 비용 경감 및 보육 환경 개선에 대부분의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바, 부모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2009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저출산 분야 예산 (47,618.9억원) 중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사업은 총 40,412.8억원 (84.9%)인 반면에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친화 사회 문화 환경 조성” 사업은 총 4,112.8억원 (8.64%)임

## 2. 해외 사례: 스웨덴의 부모 보험제도 운영 현황<sup>1)</sup>

### (1) 부모 보험의 혜택

- 부모 급부금 (Parental cash benefit for the birth of a child)
  - 자녀 출생 시점부터 8세 될 때 까지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당 480일 동안 지급
    - 처음 390일간은 평상시 급여의 80% 지급 (질병급부금과 동일한 수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당 874 SEK), 나머지 90일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인 일당 180 SEK<sup>2)</sup>

1) 스웨덴 사회보험청(2008) “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08”

2) 874 SEK는 150,171원, 180 SEK는 30,928원 (2009년 8월 현재 환율 1 SEK=171.8원 적용)

- 노동시간은 전체, 3/4, 1/2, 1/4, 1/8로 조절 가능하며 급여 수준은 노동시간에 맞게 조정됨
- 480일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최소 6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Speed premium: 첫째 아이를 낳은 후 24개월 이내에 다시 출산할 경우 첫째 아이를 낳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를 계속 지급함으로써 2명 이상의 아이를 가지는 인센티브 제공

□ 임신급여 (Pregnancy cash benefit)

-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임신부의 경우, 고용주가 임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주지 못할때 임신급여를 받을 수 있음 (출산 2개월 전 최대 50일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근로환경법에 의하여 임신 중에 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작업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 수 만큼 임신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평상시 급여의 80% 지급 (질병급부금과 동일한 수준)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일당 655 SEK<sup>3)</sup>

□ 일시적인 부모급부금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 12세 이하의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를 규칙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아플 경우, 혹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부모가 병원을 가야만 하는 경우 “일시적인 부모 급부금”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6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추가적으로 60을 더 사용할 수 있음
- 평상시 급여의 80%가 지급되며 노동시간을 전체, 3/4, 1/2, 1/4, 1/8로 조절 가능하며 급여는 이러한 노동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어 지급됨
- 자녀의 질병 상태에 따라 연령은 12세 이상까지 확대 가능함
- 자녀 방문 휴가 (contact days):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부모교육훈련, 유치원 및 방과후 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 재원 부담

-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의 4가지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한 지원 (부모보험, 아동수당 등), ② 질병과 장애의 경우를 위한 지원, ③ 노인을 위한 지원 (노인 연금 등), ④ 근로자 안전을 위한 지원 (작업재해보험, 실업수당 등)
- 스웨덴 사회보험제도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고용자 및 자영업자의 부담금, 피보험자의 기여금(실업 보험의 경우)으로 충당하고 있음

3) 655 SEK는 112,542원 (2009년 8월 현재 환율 1 SEK=171.8원 적용)

- 부모보험의 경우 고용주 기여금이 전체 재원의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가 나머지 재정 소요의 15%를 부담함
  - 고용주 기여금의 경우, 고용주 수입의 2.2%, 자영업주의 경우 본인 수입의 2.2%를 부담함
  - 2006년 부모보험에 소요된 비용은 26,094백만 SEK로 GDP의 0.9%, 정부 지출의 3.42%를 차지함 <부록 표1 참조>

### 3. 출산률 제고 관련 효과성

- 부모보험은 출산 및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적절히 보상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출산에 따른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으로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취업률을 제고시키며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함
- 스웨덴은 1970년대 이전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부모보험”을 비롯한 적극적인 모성보호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2007년 현재 1.85명의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됨
  - 스웨덴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81.5%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스웨덴이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출산율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요인은 “부모보험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분석이 많음 (김주숙, 1997)<sup>4)</sup>

### 4. 부모 보험 제도설계

#### (1) 부모 보험의 세 가지 시나리오

- 대상자: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여성 인구의 15.7%), 여성 임금 근로자 (여성 인구의 33.3%), 여성 취업자 (여성 인구의 52.1%)의 세가지 시나리오 제시
- 이용율은 산전후 휴가 사용자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 비율 (34.2%)을 최소 이용율로 가정하고, 50%, 75%, 100% 로 확대 가정
- 급여 액수는 임금의 50%와 80%의 정율제로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 제시
- 급여 일수는 만 0~만 5세 취학 전 자녀 1명당 365일
- 혜택 범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부모 급부금”만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

4) 김주숙 (2000)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복지학 No. 40

<표 2> 부모 보험 도입 방안 시나리오

시나리오	대상자	이용율	급여 액수
1안	여성 고용 보험 가입자 (여성 인구의 15.7%)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여성 인구의 33.3%)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3안	여성 취업자 (여성 인구의 52.1%)	34.2%, 50%, 75%, 100%	임금의 50%, 80%

(2) 향후 제도 설계 시 논의 사항

- 급여 액수를 임금수준에 따른 정율제, 정액제, 정율제와 정액제의 혼합 방식 중 어떠한 방안으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최대 급여 수준과 최소 급여 수준 설정 필요
- 부부의 육아 휴직 공동 사용 의무화 적용 (예: 부부 중 일방이 최소 특정 일수의 휴직 사용 의무화)
- 휴직 기간 및 근무 시간의 탄력적 사용
  - 휴가 기간은 자녀 연령 만0~만5세 기간 중 탄력적으로 총 365일 사용
  - 근무시간의 전체, 1/2, 1/3, 1/4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 수준 조정
- “임신급여,”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인 부모 급부금,” 자녀의 유치원 및 학교를 방문하기 위한 “자녀 방문 휴가” 등 혜택 범위 확대

5. 소요 예산

- 1안: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부록 표 3>참조)
  -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34.2%)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천 1백억원~2천 3백억원의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로 확대 시 연간 3천 4백억~3천 7백억원 예산 소요
  -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3천 1백억~3천 3백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5천억~5천 4백억원 예산 소요
  - 여성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6천 2백억~6천 7백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1조~1조 1천억원 예산소요

□ 2안: 여성 임금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부록 표 4> 참조)

-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34.2%)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4천 5백억~4천 9백억원의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로 확대 시 연간 7천 2백억~7천 8백억 예산소요
-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6천 6백억~7천 1백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1조 1천 억원 예산 소요
- 여성 임금 근로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1조 3천억~1조 4천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2조 1천억~2조 3천억원 예산 소요

□ 3안: 전체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부록 표 5>참조)

- 현재 수준의 육아 휴직 이용율(34.2%)을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7천억~7천 6백억원의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로 확대 시 연간 1조 1천억~1조 2천억 예산소요
- 육아 휴직 이용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한다면 연간 약 1조~1조 1천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1조 6천억~1조 8천억원 예산 소요
- 여성 취업자 전체가 육아 휴직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월 임금의 50%를 급여로 제공할 경우 연간 약 2조 1천억~2조 2천억원 예산 소요
  - 급여수준을 월 임금의 80% 확대 시 연간 약 3조 3천억~3조 6천억원 예산 소요

## 6. 재원 확보 방안

□ 기업의 법인세 인하

- 법인세 인하 분 중 일부를 “부모보험” 재정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비율은 25%로 이는 경쟁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아일랜드 12.5%, 싱가포르 20%, 홍콩 17.5%)
- 높은 법인세율로 기업 활동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법인세 인하는 기업이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법인세 인하를 조건으로 인하분의 일부를 부모보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기업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각종 출산 축하금 및 양육 수당 예산을 “부모보험”기금으로 통합하도록 유도
  -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출산 축하금과 양육 수당은 여성의 취업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걸림돌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출산률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독려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지원되고 있는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을 “부모보험”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함
- 부모 보험료 징수
  - 자녀 양육은 국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식 하에 부모보험 재정의 일부분을 사회 보험료의 형태로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함
  -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혼자 및 자녀 양육기(30~40대)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7. 기대효과

- 현행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수입의 손실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출산률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급여(최대 수입의 80%)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취업에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여성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
- 남성 배우자로 하여금 육아 휴직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양성 평등적인 부부 관계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부부의 공동참여를 가능하게 함
- 1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

<부록 표 1> 스웨덴 부모보험지출액의 변동추이 (1995~2006년)

연도	부모보험지출액		GDP 대비비중(%)	정부지출대비비중 (%)
	스웨덴(백만SEK)	원화기준		
1995	18,004	2조4769억원	0.99	3.74
1996	14,201	1조1995억원	0.77	2.81
1997	13,282	1조8273억원	0.69	2.58
1998	14,129	1조9438억원	0.7	2.6
1999	15,595	2조2145억원	0.73	2.73
2000	16,844	2조3173억원	0.75	2.88
2001	18,372	2조5276억원	0.79	2.99
2002	20,042	2조7573억원	0.83	3.05
2003	21,970	3조3022억원	0.87	3.18
2004	23,469	3조2288억원	0.89	3.34
2005	24,127	3조3193억원	0.88	3.34
2006	26,094	3조5900억원	0.9	3.42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전재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자료 “스웨덴부모보험제도의 운영현황,  
(2008.6.30)

주): 1SEK=137.58원(2007년 평균환율기준)

<부록 표 2> 스웨덴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연혁 및 변천사

년도	1인당 GDP(USD)	부모급여	일시부모급여	출산율
1974년	5,333	o 부모급여 도입 - 180일간 소득의 90% 지급	o 일시부모급여 도입 - 가구당 연간 10일, 소득의 90% 지급	1.87
1978년	8,538	o 270일로 연장 - 240일간 소득의 90% 지급 -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1.6
1980년	10,604	o 360일로 연장 - 270일간 소득의 90% 지급 -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o 자녀 당 연간 60일로 확대, 소득의 90% 지급 o 아버지출산휴가 도입 - 10일간, 소득의 90% 지급	1.68
1986년	15,667		o 자녀방문휴가 도입 - 8~12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2일간, 소득의 90% 지급	1.8
1989년	18,567	o 450일로 연장 - 360일간 소득의 90% 지급 -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2.01
1990년	19,334		o 자녀당 연간 120일로 확대, 소득의 90% 지급	2.13
1995년	21,919	o 어머니/아버지 달 도입 -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30일간 할당, 소득의 90% 지급 - 300일간 소득의 80% 지급,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o 일시부모급여 대상 확대 - 부모→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 o 자녀방문휴가 폐지	1.73
1996년	22,677	o 어머니/아버지 달(각각 30일간) 소득의 85% 지급 o 300일간 소득의 75% 지급, 90일간 저급정액급여 지급	o 소득의 75% 지급	1.6
1997년	23,430	o 어머니/아버지 달(각각 30일간) 소득의 75% 지급		1.52
1998년	24,267	o 소득의 80% 지급	o 소득의 80% 지급	1.5
2002년	29,004	o 480일로 연장(30일간 병가휴가) o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60일간 할당		1.65
2006년	34,870			1.77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OECD factbook(2008)

<부록 표 3> 시나리오 1안: 여성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여성 인구의 15.7%)

(단위: 명, 억원)

연도	출생아수	대상자수	이용율	이용자수	비용(억원)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80%
2009	446,293	70,199	34.2%	24,008	2,303	3,685
			50%	35,100	3,367	5,388
			75%	52,649	5,051	8,082
			100%	70,199	6,735	10,776
2010	440,138	69,231	34.2%	23,677	2,272	3,635
			50%	34,616	3,321	5,314
			75%	51,923	4,982	7,970
			100%	69,231	6,642	10,627
2011	432,334	68,004	34.2%	23,257	2,231	3,570
			50%	34,002	3,262	5,219
			75%	51,003	4,893	7,829
			100%	68,004	6,524	10,439
2012	422,823	66,508	34.2%	22,746	2,182	3,492
			50%	33,254	3,190	5,105
			75%	49,881	4,786	7,657
			100%	66,508	6,381	10,209
2013	412,055	64,814	34.2%	22,166	2,127	3,403
			50%	32,407	3,109	4,975
			75%	48,610	4,664	7,462
			100%	64,814	6,218	9,949

주) 여성고용보험 가입자 비율(2007년) =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15.7%),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599천원으로 가정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

자료) 연도별 출생아 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여성 고용보험피보험자수: 고용보험통계(2007), 15세이상 여성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2007), 여성 평균 임금 수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부록 표 4> 시나리오 2안: 여성 임금 근로자 대상 (여성 인구의 33.3%)

(단위: 명, 억원)

연도	출생아수	대상자수	이용율	이용자수	비용(억원)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80%
2009	446,293	148,435	34.2%	50,765	4,870	7,793
			50%	74,218	7,120	11,393
			75%	111,326	10,681	17,089
			100%	148,435	14,241	22,785
2010	440,138	146,388	34.2%	50,065	4,803	7,685
			50%	73,194	7,022	11,236
			75%	109,791	10,533	16,853
			100%	146,388	14,044	22,471
2011	432,334	143,792	34.2%	49,177	4,718	7,549
			50%	71,896	6,898	11,036
			75%	107,844	10,347	16,555
			100%	143,792	13,795	22,073
2012	422,823	140,629	34.2%	48,095	4,614	7,383
			50%	70,315	6,746	10,794
			75%	105,472	10,119	16,190
			100%	140,629	13,492	21,587
2013	412,055	137,048	34.2%	46,870	4,497	7,195
			50%	68,524	6,574	10,519
			75%	102,786	9,861	15,778
			100%	137,048	13,148	21,037

주) 전체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2008년) = 여성 임금 근로자 수 / 15세 이상 여성 인구수 (33.3%),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599천원으로 가정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

자료) 연도별 출생아 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여성 임금 근로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2008), 15세이상 여성 인구수: 주민등록인구통계(2008), 여성 평균 임금 수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부록 표 5> 시나리오 3안: 여성 취업자 대상 (여성 인구의 52.1%)

(단위: 명, 억원)

연도	출생아수	대상자수	이용율	이용자수	비용(억원)	
					급여수준 50%	급여수준 80%
2009	446,293	232,520	34.2%	79,522	7,629	12,207
			50%	116,260	11,154	17,846
			75%	174,390	16,731	26,770
			100%	232,520	22,308	35,693
2010	440,138	229,313	34.2%	78,425	7,524	12,039
			50%	114,657	11,000	17,600
			75%	171,985	16,500	26,400
			100%	229,313	22,000	35,201
2011	432,334	225,247	34.2%	77,035	7,391	11,825
			50%	112,624	10,805	17,288
			75%	168,936	16,208	25,932
			100%	225,247	21,610	34,576
2012	422,823	220,292	34.2%	75,340	7,228	11,565
			50%	110,146	10,567	16,908
			75%	165,219	15,851	25,362
			100%	220,292	21,135	33,816
2013	412,055	214,682	34.2%	73,421	7,044	11,270
			50%	107,341	10,298	16,477
			75%	161,011	15,447	24,716
			100%	214,682	20,597	32,955

주) 전체 여성 취업자 비율 (2008년) = 15~49세 여성 취업자 수/ 15~49세 여성 인구 수 (52.1%), 여성 평균 임금은 월 1,599천원으로 가정 (49세 이하 여성의 평균 임금)

자료) 연도별 출생아 수: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15~49세 여성 취업자 수: 경제활동인구조사(2008), 15~49세 여성 인구 수: 주민등록인구통계(2008), 여성 평균 임금 수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2007)

## 참고문헌

- 고용보험통계(200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7)  
국회 입법조사처, 전재희 의원실 입법조사회답자료 “스웨덴부모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2008.6.30)  
국회입법조사처, OECD factbook(2008)  
김주숙 (2000)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와 여성의 경제활동,” 한국사회복지학, 40, 68-96.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스웨덴 사회보험청(2008) “Social Insurance in Figures, 2008”  
신유미, 2008,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스웨덴 정책을 통한 시사점 모색,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2008(1), 44-60.  
주민등록인구통계(2007),  
  
International National Security, 2001, "Social security in Sweden"

MEMO

MEMO

MEMO

MEMO

MEMO

